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380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와 하창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창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12. 13. 접수 제71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